

의안번호	2214907
의 퇴 인	김교홍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2.
추계번호	25A6753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 신설 (영상제작에 대한 재정 지원)	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화, 드라마 등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에 영상제작의 국내·외 파급효과, 고용창출 규모, 기술·노하우 이전 효과,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제작 기업에게 노무비,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영상제작기업, 지원금 사용용도, 지원한도 및 산정방법, 지원신청 및 심사절차, 영상제작기업과의 지원금 협상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2 신설 (영상제작에 대한 재정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시행될 경우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
-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수와 각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안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는 영상제작의 국내·외 파급효과, 고용창출 규모, 기술·노하우 이전효과 및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나,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제작될 영상의 성격, 제작 규모와 이에 따른 고용 창출 및 기술 이전 효과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 - 또한, 같은 조 제2항에서 재정 지원 대상 기업, 지원 기준 및 범위, 기업과의 지원금 협상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기준이나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(IFEZ), 부산진해(BJFEZ), 광양만권(GFEZ) 등 총 9개 구역에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,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, 시설 설치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, 도로·철도 등 기반시설 지원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
 - * [참고자료] 경제자유구역 개요
-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하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영상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경제자유구역 개요

- **(목적)**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조)
 - **(경영환경)** 조세감면*, 노동·수도권공장총량제 등 규제 특례, 입지지원**
 - * 국세(관세 등), 지방세(취·등록세, 재산세 등)
 - **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
 - **(생활여건)** 외국인학교, 외국인병원 설립 등 특례 제공
- **(다른 구역과의 구분)** 경제자유구역은 복합개발이라는 점에서 산업용지 공급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와 구별
 - 산업·상업·물류·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~20년의 개발 및 콘텐츠 집적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 조성
- **(지정현황)**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총 9개 구역 지정·운영 중
 - 총면적 271.39km², 98개 사업지구

지역	지정일	위치	면적	단위지구(개)	공항·항만
인천	2003.8.11.	연수구, 중구, 서구	122.34km ²	32	인천공항· 인천신항
부산·진해	2003.10.30.	부산 강서구 경남 창원시	49.93km ²	22	김해공항· 부산신항
광양만권		전남(여수·순천·광양) 경남(하동)	57.07km ²	17	여수공항, 광양항
대구·경북	2008.5.6.	대구, 경산, 영천, 포항	18.41km ²	8	대구공항
경기		평택, 시흥	5.24km ²	3	평택항 인천공항
강원	2013.2.14.	강릉, 동해	4.33km ²	5	동해항
충북		청주	4.96km ²	4	청주공항
광주	2020.6.3.	남구, 북구, 광산구	4.36km ²	4	광주공항
울산		남구, 북구, 울주군	4.75km ²	3	울산공항, 울산항
합계			271.39km ²	98	—